

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
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김미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83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30.

발 의 자 : 김미애·김형동·주호영
주진우·김예지·최보운
서지영·안상훈·김재섭
서명옥·조정훈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보조기기 관련 사례관리 사업, 보조기기 정보제공, 보조기기 대여·수리 등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사업을 위해 광역지자체마다 지역보조기기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역할이 보조기기의 대여·수리에 그치고 있으며, 장애인등이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복지 정보 접근성이나 지역사회 내 교류 기회 제공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업무에 보조기기 사용자 간 교류·협력 프로그램 운영, 장애인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정보제공을 추가하여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역할을 확대하고, 장애인등의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(안 제14조제1항제8호 및 제9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
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제8호를 제10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보조기기 사용자 간 교류·협력 프로그램 운영

9. 장애인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정보제공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지역보조기기센터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보조기기센터(이하 “지역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	제14조(지역보조기기센터) ① 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7. (생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<u>8. 보조기기 사용자 간 교류·협력 프로그램 운영</u>
<u><신설></u>	<u>9. 장애인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정보제공</u>
8. (생략)	<u>10. (현행 제8호와 같음)</u>
② ~ ⑥ (생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